

## 겨울철 전기안전 관리요령

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편리한 전기는 잘못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큰 불행을 주므로, 전기사용은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.

날씨가 추워지면 난방을 위하여 전기히터 등 각종 전열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는데, 동절기에는 난방기구 사용의 증가와 건조한 날씨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전기화재 발생이 20 ~ 30% 증가한다.

동절기의 일상생활에서 대처하여야 할 전기안전 요령을 알고, 실천하는 것이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므로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요령을 살펴보면,

-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게되는 전기난로, 전기 온풍기 등 전열기기는 사용전 먼지제거는 물론 플러그의 파손 및 코드선 피복 손상여부, 온도 조절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.  
특히, 전열기기가 넘어지는 경우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장치의 동작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제작·수리업체에 의뢰하여, A/S후 사용토록 한다.
- 전기히터, 전기온풍기, 전기장판 등 난방용 전열기기는 사용중 부주의하면 언제라도 전기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한다.
  - 무심코 켜 놓은 채 잊어버린 전기히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많으므로 부재중일 경우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둔다.
  -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접혀지거나 의자 등으로 일정부분만 압력이 가하여 질 경우, 그 부분이 과열되어 전기화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중에 접혀지거나 무거운 물질로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.
  - 전열기기는 전력소모가 많아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전열기기를 사용하면 과부하가 되어 합선사고가 발생하므로, 콘센트 용량에 맞는 전열기기를 사용한다.
  - 전열기기 사용 중에는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
- 아울러 누전차단기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월 1회 정도 차단기 자체에 부착된 빨간(또는 녹색)버튼을 눌러 딱하고 떨어지는지 확인하고,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떨어지다가 중간에 걸려 내려오지 않으면 고장이므로 반드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
전기재해는 주기적인 점검과 정상적인 사용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, 우리 모두가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과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안전은 물론 가족의 행복도 확보되므로, 밝고 편리한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자.

 **전기재해예방을 위한 실천사항**



☑ 매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의 동작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.



☑ 플러그는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하여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세요.



☑ TV, 오디오 등의 전자제품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


☑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콘센트에는 안전커버를 사용하세요.



☑ 세탁기, 냉장고 등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지시설을 하세요.



☑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마세요.



✓ 전기제품은 반드시 전기안전용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사용하세요.



✓ 전선은 무거운 물건으로 누르거나 접하지 않도록 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하세요.



✓ 전열기는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 전기요금을 절약하세요.



✓ 과부하로 인한 단락사고 위험이 있으니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.

"늘 가까이  
언제나 안전하게"  
"Ever Safety" KESCO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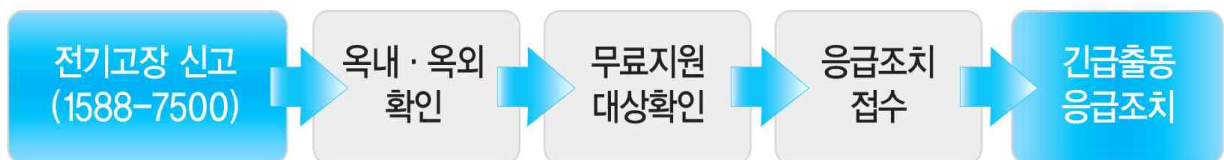
## 전기안전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(Speed call)

### 1 Speed-call이란?

전기 119제도인 'Speed-call 제도'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, 문제점을 해소해주는 제도로 전기시설 누전, 정전 등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긴급 출동해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업무이다.



### 2 업무처리절차



### 3 이용방법

저소득층의 주거용 전기고장 시 **한국전기안전공사(1588-7500)**으로 연락하시면 가까운 사업소로 연결됩니다.

### 4 무료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 계층(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주택 및 농어촌의 주택 포함) 1~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, 사회복지시설

### 5 응급조치 범위

주거용(주택) 전기설비에 한하며, 무료입니다.

전기공사법에서 정하는 '경미한 공사'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, 공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전기기구 고장 등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